

경운대학교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운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발전계획'이란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비전, 발전목표, 추진 전략과 실행과제 및 예산을 정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2. '대학 운영계획'이란 대학 발전계획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와 사업단별로 세부사업의 목표, 세부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을 정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말한다.
3. '대학발전추진단'이란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주관부서 배정, 성과분석 및 개선조정, 그 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기획처'는 발전계획 추진의 실무를 지원하고, 과제별 연간 실행계획인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 시행을 전담한다.
5. '담당부서'란 발전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본부, 부속 및 부설기관 등의 행정부서를 말한다.
6. '재정지원사업단'이란 발전계획 전략 및 과제들과 연계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단 또는 학과를 말한다.
7. '성과평가'란 대학 발전계획(대학 운영계획)의 추진 상태 점검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진척도와 정량·정성적 분석을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자체평가'란 대학 발전계획의 추진 상태 점검과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정도 등 추진사업 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학 자체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대학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대학 발전계획은 대학발전추진단의 입안을 통해 수립한다.

③ 대학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한다.

1. 대학 외부 환경 분석

2. 대학 내부 역량 분석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 특성화계획이 포함된 대학 발전 체계 및 전략 수립
5.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지수) 수립

③ 대학 발전계획 수립은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내외부 변화, 성과분석에 따라 전략과 과제들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학발전추진단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확정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담당부서 및 재정지원사업단의 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의 목표, 세부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계획을 매년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는 제출받은 부서별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규모 등을 각 담당부서에 공유한다.

③ 재정지원사업단은 수립한 연간 실행계획의 사업별 방향성 및 중복성, 예산계획 등에 관해 대학혁신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총장은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 및 재정지원사업단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추진·관리하여야 하며,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각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은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④ 기획처와 대학혁신원은 각각 담당부서와 재정지원사업단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발전추진단) ①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추진단을 둔다.

② 대학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발전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기획처) ① 대학 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기획처로 한다.

② 기획처는 필요한 경우 타 부서 인력을 위촉하거나 별도의 팀을 둘 수 있다.

③ 기획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행 총괄 지원
2. 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
3. 사업비 집행, 회계 관리 및 연차별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4. 사업 추진관리 및 성과모니터링

제3장 성과관리

제9조 (성과관리 및 환류) ① 대학발전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년도 대학 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개선·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 성과평가의 결과
2. 대학자체평가의 결과
3. 대학종합만족도조사의 결과
4. 재정지원사업단의 자체평가 및 성과점검의 결과

제10조(성과지표 설정) 각 담당부서와 사업단은 대학 운영계획 제출 시, 대학 발전계획의 성과지표 또는 성과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획처는 대학 운영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1조(발전계획 성과평가) ① 각 담당부서와 사업단은 연차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설정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발생한 성과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발전추진단은 제출된 대학 운영계획 자체점검보고서를 통해 추진과제별 진척도와 완성도, 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한다.

③ 대학 운영계획의 평가 결과는 대학발전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발전계획 조정 및 차년도 대학 운영계획 수립에 환류하여 반영한다.

제12조(발전계획 자체평가) ①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체평가규정」에 따라 대학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② 기획처는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운영 및 성과를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학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발전추진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대학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발전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대학 발전계획 조정 및 차기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환류하여 반영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